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70
----------	------

2023년 11월 2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김경훈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11월 29일 상정·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경훈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제6조

나. 예산 조치 : 별첨 참조

다. 기 타 :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귀수)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수돗물 절약 사업 추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OECD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돗물 사용량은 1인당 일평균 282리터¹⁾를 사용, 세계 3위 수준의 물 사용량으로 향후 2050년에 이르면 물 스트레스 국가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시 등 14개 시·도에서는 수돗물 절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 서울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 : 5곳 제정·운영>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	-	'22.12.30	'20.11.9	'23.2.23	-	'23.4.6	'17.9.29

<도·특별자치도 : 9곳 제정·운영>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20.7.15	'19.1.4	'23.7.7	'17.9.20	'20.5.29	'20.8.6	'23.7.13	'17.8.3	'17.12.29

- 세부적으로 안 제5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서 자치구별 물 수요

1) 2022년 실시한 '서울시 물 사용량 조사'에서는 1인당 일평균 264리터 사용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은 「수도법」 제6조제1항²⁾에 따른 체계적인 물 수요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는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절수설비 설치를 통해 수도물 사용량을 30~40%³⁾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적 지원은 절수설비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임.

다만,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등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아리수 2.0 중점 사업 중 하나로 2040년 까지 42억 7천6백만원을 들여 7만 세대 이상에 절수설비 설치 지원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절수기기 지원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합계	투 자 계 획					'27~'40년
		소계	'23	'24	'25	'26	
절수기기 설치지원	4,276	2,356	76	760	760	760	1,920

2)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절수기기 지원 연차별 세대수>

(단위 : 세대)

주요사업	추진계획				'27~'40년
	'23	'24	'25	'26	
절수기기 설치지원	1,000	10,000	10,000	10,000	40,000

- 안 제7조(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는 교육, 홍보, 시민참여 등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교육, 홍보 등을 위한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민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임.

- 안 제8조(포상)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공과 시민사회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절수설비에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수도물 절약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도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

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자치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참여를 위한 인식 개선
2.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3. 우수사례 발굴, 수돗물 절약 홍보 물품 지원
4. 가뭄으로 인한 재난상황 예방단계 및 재난상황 시 절수를 위한 옥내 밸브 조정에 따른 밸브 부속품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